

2023년도 하반기 수산식품품질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식품품질관리센터의 2023년도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0.
국립수산물과학원장

1. 채용인원 및 자격조건

가.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전·후면 사본을 제출하여 자격이 증빙된 자에 한함
- 학력조건이 있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 졸업(학위취득)예정자 지원 가능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아래 각호와 같은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나. 모집단위별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등 세부내용

모집 단위	직종	모집 인원	자격조건과 우대사항 및 계약기간	과제 및 담당업무 등	지역
1	연구원	1	○ 학력(전공) : 학사 이상(전공 무관) ○ 자격증 : 무관 ○ 경력 : 무관 ○ 우대사항 : 1.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 2.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계약일~8개월(일용)	○ 해조류 품질보호제도 운영 업무지원 - 해조류 출원품종 및 기존품종 특성조사 업무보조 - 특성조사 결과 및 실험 데이터 정리 - 기타 연구 관련 행정업무보조	목포

다. 가점요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각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각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2. 근무조건

- 가. 신 분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 또는 동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8개월

다.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함이 원칙

※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되거나, 평일·주말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음

라. 보 수 :

직종	기본급	비고
연구원	월 1,940,760원	○ 2023년 각 직종 1호봉 기준 기본급(제세·보험료 공제 전 금액) ○ 급식비 140,000원 별도 지급 ○ 재직기간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 6개월 이상~1년 미만: 25만원

마. 근무부서 :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바. 기타 근무조건 : 「해양수산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 적용

3. 응시자 제출서류

※ 학력·경력·자격증 등은 아래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하며,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이 아닌 자격증·경력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 응시자 서약서 1부(별지 제13호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해당자	○ 경력·졸업 증명서, 자격증(예: 운전면허증 사본 등) 등 증빙자료 각 1부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가점 부여)

※ 제출서류에 인 또는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16.(월) ~ 10. 19.(목)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구분	서류접수	담당자
접수장소	(우)58746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서무실 이메일 : nunbusyoo@korea.kr	김양희 (061)280-5301

다. 접수방법 : 해당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라. 접수확인 : 서류접수 여부는 응시번호 문자 통보(이력서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평정요소 및 평정방법 >

○ 평정요소와 배점

- 응시요건 적격여부: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여부
- 서류심사

평정요소	배점	비 고
자기소개서	30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우대조건 (학위·학과· 경력·자격증)	20	* 자격조건에 명시된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을 경우 우대조건* 1개당 5점 부여 * 단, 같은 종류의 우대조건은 1개만 인정

○ 평정방법

- (평정기준) 응시요건이 적격인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까지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성적에 해당 가산점 비율을 곱하여 평정

- (동점자 처리) 선발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 합격확인

-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합격자
공고문 확인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평정방법 >

○ 평정요소

1. 공무원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방법

- (평정기준) 5개 평정요소를 각각 ‘상(10점)’, ‘중(7점)’, ‘하(4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순 결정
 - *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응시자(불합격기준 해당자 제외) 대상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하여 높은 순으로 결정**
 - * 동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순위 결정
 - * 제척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피·회피로 일부 위원의 점수가 무효가 된 경우 다른 위원의 집계된 성적의 평균을 전체 심사위원 수로 곱하여 성적 결정, 순위 부여

○ 합격확인

- **최종(면접시험)합격 여부**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합격자 공고문 확인**

다. 제척사유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 제척사유 :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6. 채용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결격사유 증빙서류 제출	근로계약
10. 10.(화) ~ 10. 19.(목)	10. 16.(월) ~ 10. 19.(목)	10. 24.(화)	10. 26.(목) 14:00	10. 31.(화)	11. 2.(목) 14:00	개별통보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공고장소**: **우리원 홈페이지**(www.nifs.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 서류접수 여부는 **응시번호를 문자로 통보**(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서류전형 및 최종(면접시험) 합격 여부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하지 않음. **반드시 합격자 공고문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 개시 이후 도착하는 경우 **응시불가**

○ 면접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

* **2023.11.2.(화) 14:00**까지 전자우편(nunbusyeo@korea.kr) 제출

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성년후견, 한정후견) 1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발급(무료, 주민번호 공개)

②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크레딧포유**(credit4u.or.kr) 회원가입 후 발급 가능(무료)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자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취를 통해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해당,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임의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및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우리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www.nifs.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센터(061-280-5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모집단위		성명	
○ 성장과정 - ○ 지원동기 - ○ 업무수행계획(포부나 자세 등) - ○ 특기사항 - 년 월 일 작성자 : ○ ○ ○ (서명)			

- 작성요령
 -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학교명, 출생지, 나이,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감점을 받거나 불합격될 수 있음

이 력 서

응시번호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성 명		휴대전화번호	
모집단위		응시직종	
배치희망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 모집단위 내 부서가 1개일 경우 1순위만 기재

1. 학 력

기 간	전공분야	학위 구분
① . . . ~ . . .	학과	학사(재학,수료,취득)
② . . . ~ . . .	학과	석사(재학,수료,취득)
③ . . . ~ . . .	학과	박사(재학,수료,취득)

* 출신학교 기재 금지

2.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책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3. 관련 자격증 등 특이사항

자격증 명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비 고

응시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1.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채용담당자에게 알리겠습니다.

< 시험위원과의 특수한 관계 >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이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2. 「해양수산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국립수산물과학원장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목적) 채용시 확인용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후견등기, 파산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 정보
- ◆ (보유·이용기간) 준영구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날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채용시 확인용
- ◆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 정보
- ◆ (보유·이용기간) 준영구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날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